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양 삼 승

변호사

I.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언론중재제도의 도입은 1980. 12. 31.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위 법의 시행과 함께 소위 반론권의 개념이 학문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나라 언론법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이루어졌다.

이후 언론중재제도는 초기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성장을 해오던 중,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그 동안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언론기본법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언론중재제도 자체는 살아남아 1987. 11. 28. 정간물법 또는 방송법의 일부로 흡수되게 되었다.

위 1987년의 위기를 넘긴 언론중재제도는 그 이후 약 10년 동안 실질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데에 큰 성과를 올렸다. 즉 그 동안의 연구·토론의 결과로서 법전상의 정정보도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반론권”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인받는 성과를 올렸으며, 실무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서 반론권 내지는 언론중재의 개념이 일반 국민에게 익숙한 제도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주변 여건의 성숙에 힘입어, 언론중재제도는 그 체제의 본격적인 정비와 제도약을 꿈꾸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드디어 1996. 7. 1.의 법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결실은 “반론보도”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채택함으로써 오랫동안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반론보도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서도 선택적으로(즉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중재위원회에 “직권중재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재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커다란 변화는 결국 중재위원회의 위상을 “양적 및 질적으로” 높이는 것으로서, 그 동안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표현이며, 장래의 도약의 가능성이 보여주는 의미있는 변화인 것이었다.

II. 앞으로의 과제

이제 2001. 1. 1.이 되면 우리 나라에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지 만 20년이 되어 명실상부 우리의 중재제도는 성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동안의 성장기에서 겪어왔던 아픔을 디디고, 활기찬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오는 것이다.

앞에서 간략하게 보아온 우리의 언론중재제도 20년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우리의 중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스스로 명백하게 보여진다.

과거 수년간 중재제도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가 축적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이를 종합·정리하여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논의의 성과로서 별첨과 같은 “언론피해구제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위 법안의 내용은 다방면에 걸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그 중요한 골격을 나누어 보면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첫째는, 중재의 주체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의 고양”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언론중재와 관련된 제도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언론중재와 관련된 제도의 “신설 및 변경”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에 관한 것이다. 아래에서 이 점들의 각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III. 언론중재위원회 위상의 고양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로 인한 여러 경우에 있어서 그 조정자로서 차지하는 역할을 보다 넓힘으로서, 언론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와 나아가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및 중재위원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중재위원회 자체의 위상의 고양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 즉 바꾸어 말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어느 범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 나라 언론중재제도의 본질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지극히 정책적인 문제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의 문제이다.

추지하다시피 1980. 12. 31. 우리 나라에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우리의 법은 중재위원회의 위상에 대하여 지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즉 그 당시에는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반론권의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언론계에의 충격을 우려하여, 그 완충장치로서 중재위원회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위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만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것만으로도 불안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순수하게 “조정”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서 하등의 강제적인 효력도 부여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제도가 시행되어 가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고 중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호의적인 것임이 밝혀지게 되자 1996. 7. 1.의 개정시에는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중재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나아가 중재위원회에 “강제중재”의 권한을 부여하여(다만, 이의신청의 권한은 유보되어 있었다.) 중재부의 중재에 실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진일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중재제도가 성년기를 맞이함에 따라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획기적인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다.

가. 언론“중재”제도의 도입(27조, 28조) : 양적 위상제고 ①

개정안에서는, 언론분쟁에 관한 해결의 한가지 방안으로 언론“중재”라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는 우선 “조정” 및 “중재”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법률상 “조정”이라는 개념은 알선이나 권유와 같이 양 당사자가 조정자의 조정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가 없고 단지 권유적인 의미만이 있는 소극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중재”라는 개념은 장래에 생길 또는 현재에 이미 발생한 어떤 분쟁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사전에”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로 약속·합의한 이후에만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중재인의 중재가 내려진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승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로서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종래 우리의 실무에 있어서는 위 두 가지 개념을 명백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서로 혼동하여 사용해 왔으며, 현행법상의 언론중재제도도 이와 같은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인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있어서는, 위 개념을 명확히 법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제 27조에서 「언론 “중재”」의 제도를 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즉 제27조는 “당사자 쌍방은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위 중재신청은 조정절차의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고 하며 나아가 제28조 ②는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중재제도는 상사거래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의 상사중재원은 이점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중재제도는 거의 모든 중요한 상거래의 중요한 계약조항의 하나로써 적극 활용되고 있다.

언론중재의 경우에는 상사중재와 달라서, 사전에, 이와 같은 합의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고, 또한 조정과정이나, 사후에 당사자의 합의로 이러한 중재가 이용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중재에 의한 해결은 사안의 종국적 해결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 유용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손해배상청구에도 조정가능(21조) : 양적 위상제고 ②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개정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다. 즉 1996. 7. 1.의 법개정에 즈음하여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되었었다.

이에 대한 찬성론으로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의 구제방안으로서는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의 3가지가 있는바, 이중 앞의 2가지는 이미 현행법상 언론조정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만큼, 나머지 한가지인 손해배상까지도 조정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서,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아니하다. 즉, 언론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경제적 손해로 나누어질 것인데, 어느 것이나 그 액수의 산

정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특히 경제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인과관계 및 손해범위의 산정이 지극히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의 제소에 앞서서 신속히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마무리지으려는 중재제도의 취지에 적합치 아니하며, 이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중재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권한과 위상을 부여할 것이며, 현재 우리의 중재위원회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의 평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개정안에 있어서는 중재위원회의 20년에 이른 성장과정에 비추어 자신감을 나타내어 손해배상의 경우까지도 조정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21조).

다. 조정전치주의의 획일적 채택(29조 3항) : 질적 위상제고 ①

현행의 법률규정에 의하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법원에 제소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반론보도청구의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다시 말하면,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아예 중재의 대상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현행법의 태도는 최초의 규정에 비추어서는(당시는 반론보도만이 중재의 대상이었고, 정정보도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인 것으로서, 중재위원회의 조정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 점을 획일화하여 규정하였다. 즉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소(손해배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소)는 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제소에 앞서 중재위원회의 조정은 3가지 경우에 모두 거쳐야 함으로써, 조정전치주의를 획일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조정전치주의의 획일화에 반대의 견해를 가지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획일화는 법원에 이르는 길을 복잡하게만 할 뿐으로서 결국 궁극적인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전치주의의 강요가 불필요한 또하나의 절차를 강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원에서의 절차를 피하여싼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로서 분쟁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지는, 결코 논리의 문제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중재위원회의 실무처리 현황이 어떠한지의 실증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중재위원회 창설이후 현재까지 20년 동안의 각 중재부의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사건들이 중재성립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으며, 통계상으로는 신청취하의 항목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성립을 토대로 한 취하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중재과정에서의 합의비율은 훨씬 높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합의비율은 일단 제소된 후 법원에서의 합의비율에 의하면 월등히 높은 것임은 통계상 명백하다. 이와 같이 과거 20년의 실무경험상 중재위원회의 중재실적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이상, 한편으로는 중재의 대상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언론피해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 별첨 최근의 중재신청사건 처리현황 통계표 참조)

라. 직권조정에 이의신청시 소제기 간주 및 고법관할 : 질적 위상제고 ②

현행법은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1980. 12. 31.의 최초의 법규정에서 진일보하여 직권중재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중재부는 사건을 심의·중재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아니하였으나, 사안의 성질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직권중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직권중재결정에 불복방법을 열어두지 않으면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위 중재결정은 효력을 잃고, 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이의신청이 남발되어, 공연히 법원에서의 제소만이 늦추어지는 부작용만이 생긴다는 비판이 있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권중재결정에 이의신청이 행해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자동적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제30조 2항)

개정안은 나아가 직권중재결정을 위해 중재부에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법원에서 1심부터 심리하게 된다면 공연한 시간과 수고의 낭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1심의 심리를 건너뛰어(이는 중재부의 심리를 1심의 심리로 대체하는 취지이다.)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의 관할로 함으로써, 공연한 시간의 낭비 및 지연책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제33조 2항).

그리고 이와 같은 방안을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뿐만 아니라,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 간주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31조) 및 중재결정(32조) 취소의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33조 2항)

이러한 규정의 입법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경우의 관할을 고등법원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중 3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로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2. 중재위원의 위상의 고양

중재위원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는 중재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와 서로 맞물려 있다.

즉 이번의 개정안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하여, 현행법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손해배상까지도 중재의 대상으로 하고,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에 대해서도 법원에의 제소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중재부에 대하여도 거의 1심 법원에 버금가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여, “언론중재”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제소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재위원회의 위상제고와 발맞추어 중재위원회의 위상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첫째는, 언론중재위원장의 “상임화”가 절실하다(8조⑤) 할 것이다. 앞서 본 개정안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중재위원회의 업무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상근하는 위원장의 존재는 필연적인 것이다.

나아가,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명실공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또한 법원에의 제소에 앞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조직으로 자리매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위상에 걸맞게 중재위원의 임명권자도 격상하여 현재의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언론문화의 창달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8조②).

IV. 언론중재관련 제도의 통합(효율성의 확보)

이번 개정안이 의도하고 있는, 또하나의 목표는, 언론중재에 관련된 여러 제도 및 규정들을 통합하여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2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

가. 단일법의 제정

현행법의 여러 규정상 언론피해구제와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정간물법, 방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를 찾아보기 어렵고,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내용도 서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제작·반포·판매·방송금지가처분 등을 포괄하는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규율한 단일법의 제정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이 개정안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희망이 달성되었다.

이는 그 동안 분산되어 여러 곳에서 세 들어 있던 식구들을 이제는 여러 여건이 성숙되어 하나의 집을 지어 한지붕 밑으로 모으려는 시도로서, 법시행 20년을 맞이하여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나. 선거시기의 반론보도 청구절차 통일 (38조 내지 40조)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중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방송에 관련된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정기간행물에 관련된 것은 선거기사심의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원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원적인 규정보다는, 구제절차를 통일화시키고, 조정(중재)절차의 효용성을 높이고, 나아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선거시기의 반론보도청구는 이를 모두 언론중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제4절(38조 내지 40조)의 규정하에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V. 언론중재관련 제도의 신설 및 변경(효율성의 증대)

이번 개정안이 의도하고 있는 세 번째의 중요한 목표는, 종전의 기존관념에서 벗어나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언론주변 여건의 변화를 받아들여서 이를 법률의 규정으로 수용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은 신선한 것이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념하여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짐이 없도록 개정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부분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4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대응(정보통신매체) (2조 3, 4호)

최근의 통신수단의 발달은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활성화는 장래의 예측을 불허할 정도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각종 통신수단의 발달에 대응하여 이 각각의 통신수단에 상응하는 반론청구 등 언론피해 구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법적인 개념 즉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개념에만 따른다면,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는 기존의 언론사가 자기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한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쌍방향성을 지닌 매체의 특성상 인터넷 매체에 대한 구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지만, 기존의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전재(轉載)하는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성 및 대중매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제대상으로 함으로써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및 4호).

나. 옴부즈맨 제도의 설치 의무화 (5조)

언론에 의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언론기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론기관 자체의 활동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인간의 속성상 자율적인 규제의 실효성에 항상 의문이 있어 왔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자율적 규제제도의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더욱이 최근에 이르러 일부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중요 언론매체에 있어서는 언론관계에 밝은 변호사들을 자문변호인단으로 선정하여 보도가 나가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보도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은 수정·삭제함으로써, 피해의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최근의 이러한 바람직한 일부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그리고 최소한으로라도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사내 옴부즈맨” 제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개정안 제5조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 또는 법률교수직에 있는 자 또는 언론현업에 종사한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옴부즈맨을 두도록 하고(3항 및 2항), 위 옴부즈맨은 언론사의 보도내용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를 사전 또는 사후에 검토·확인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항).

비록 선언적인 규정이기에는 하나 언론이 나아갈 장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참신한 규정이라고 여겨진다.

다.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완화 (14조 1, 2항)

종래의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언론에 의한 범익침해의 경우에 인정되는 구제수단 중 정정보도청구권은 궁극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가지 유형으로 인정되었다. 즉 원칙적인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의 방법 이외에 특별한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원상회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리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당연한 전제 요건으로서 “진실이 아닌 보도”라는 요건 이외에도, 가해자인 언론사측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입증이 요구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의 문제를 떠나 실제로 관철했다면, 언론피해의 구제방법 중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신청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점에서는 서로 본질상 다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정정보도청구를 구태여 불법행위로 인한 구제수단의 일종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정정보도라는 권리의 실제에 중점을 두어서, 정정보도의 청구를 위하여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4조 1항 및 2항).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으

로서는, “정정보도 청구권”은 반론권과도 다르고, 또한 민법의 일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예외적인 원상회복 조치와도 다른 “특별한 성격의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멸시효기간 단축(13조 ①, 14조 ③, 17조 ③)

언론매체의 급속한 기술적 발전 및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의 유통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가 언론보도 사실을 과거에 비하여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대생활에 있어서 모든 생활의 리듬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빨라진 것을 감안한다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소지 역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함으로써 언론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개정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방법을 신속·간이하게 보장해 주는 데에 대한, 언론사 측에 대한 당연한 배려사항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하여, 현행법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당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민법 760조), 개정안에서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2개월 또는 그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로 단축하였다(13조 1항).

또한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또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로 단축하여 규정하였다(14조 3항).

그리고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도 정정보도와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17조 3항).

VI. 법원에서의 절차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및 중재위원회 내에 있어서의 여러 조항들뿐만 아니라 언론피해구제사건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피해구제사건이 법원에 제소되어 심리되는 과정에 관하여도 몇 가지 특징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현행 법령의 규정 및 법원의 실무례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법률적으로 그 실체적 권리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즉 전자는 형식적인 권리이고, 후자는 실질적인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 위 2가지의 소송은

절차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전자는 가처분의 절차에 의하고 후자는 본안소송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이에 따라 사건의 배당 역시 달리하고 있다(전자는 신청부로 후자는 본안부로 배당함).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은 형식논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모두 결국은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실질적인 공통점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위 실질적인 공통점을 중요시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위 3가지의 소송은 서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모두 본안소송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29조 2항).

다만 반론보도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본질이 형식적인 권리인 것이므로(즉, 원 보도의 진실여부를 묻지 않는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서도 청구를 인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4조 2항).

나아가 언론피해구제사건은 신속한 해결이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건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4조 3항).

그러나 이 3개월의 규정은 재판업무의 본질상 혼시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가집행선고를 하도록 하고,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4조 4항).

VII. 맺는 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제도가 시행되어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있어서, 언론피해구제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법학자 및 언론인들의 이념을 지배하고 있는 2가지의 등대가 있었는 바, 그 하나는 “언론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중재기능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지난 수년간 위 2가지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하여 왔고, 그 연구의 성과를 집약한 것이 이번의 개정안이다.

약간의 과장을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우리 나라의 현재의 법제도 및 언론중재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개정안의 내용이 현

재로서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자신 있게 부연해 두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그 동안 20년에 걸쳐서 경험을 쌓아온 우리의 언론중재제도 및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의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에 대한 우리 나름의 자신감과 신뢰감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부디 언론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중지를 모아,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개정안이 만들어져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언 론 피 해 구 제 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의 책임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정당한 법익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활동을 보장하여 양자의 조화를 통한 공정한 여론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2. 방송 :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매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의 내용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를 말한다.
4. 언론사 : 정기간행물과 방송, 정보통신매체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5. 언론사의 대표자 :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실적 주장 :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7. 언론보도 :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매체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8. 정정보도 :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9. 반론보도 :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

- ①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② 누구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수단과 방법으로 언론에 부당한 간섭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언론은 취재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편성, 제작, 보도할 자유를 갖는다.

제4조(언론의 책임)

- ① 언론사의 소유자, 발행인, 편집인, 편성책임자 기타 누구를 막론하고 언론을 자기 또는 그 친족, 그가 소속한 정파나 종교 등의 부당한 이익추구를 위한 도

구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도덕관념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인격적 성장을 고양하는 등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언론은 타인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침해가 이루어진 때에는 스스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등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사내 옴부즈맨)

① 언론은 공표 전에 보도내용의 진실성 및 그것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최대한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공표 후에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님이 밝혀지거나 이해관계인의 반론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일간신문과 방송, 통신은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할 자율적 기관으로서 사내에 1인 이상의 옴부즈맨을 두어야 하며 정기간행물과 방송을 겸영하는 경우 각기 따로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옴부즈맨은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의 법과대학교수의 직에 있었거나 5년 이상 언론 현업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여야 한다.

④ 옴부즈맨은 당해 언론사의 보도내용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를 사전 또는 사후에 검토 확인하여 언론의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당한 명예나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등 제4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언론사의 발행인, 편집인 등 책임 있는 자에게 시정을 구하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언론사는 옴부즈맨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언론의 면책)

① 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이라

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언론은 그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처우하거나 그의 친족 또는 주변인에 관하여 불필요한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간과 송달)

①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의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에 의하거나 모사전송(팩시밀리)의 방법에 의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8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하고 언론보도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며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이상은 언론계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중재위원과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가 만료한 때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⑥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에 관하여 누구로부터든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비상임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제9조(중재부)

① 분쟁의 조정, 중재 및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중재부를 두되 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재부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중재부의 의사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제1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년도 정기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피해구제

제1절 총칙

제1관 손해배상청구

제12조(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① 언론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신용 등 인격적 법익이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도와 관련하여 취재, 편성, 제작 등에 관여한 자는 언론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각기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소멸시효)

- ① 제12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 또는 그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론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한 때에만 중단된다.
- ③ 제2항의 언론사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가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때에도 같다.
- ④ 중단된 시효기간은 이 법에 따른 재판 또는 그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결정 등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특정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복수의 피해

자들 상호간에 생계를 같이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그 1인에 대한 시효 완성의 효과는 전원에게 미친다.

제2관 정정보도청구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또는 그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 ④ 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정정보도청구권에 준용한다.
- 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 ①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하여야 한다.
- ③ 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또는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정정보도문은 원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 내에서 기사의 크기, 위치, 방송주파수와 방송시간대, 형식 등이 동일하거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정보도문은 독자투고의 형식이나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예외 사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보도내용 중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거나 기타 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원래의 보도 후 후속보도에 의하여 충분한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3. 광고(의견광고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4.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개된 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절차를 사실대로 보도한 경우

제3관 반론보도청구

제17조(반론보도청구의 요건)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불문한다.
- ③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반론보도청구에 준용한다.

제18조(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 ①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준용한다.
- ② 반론보도문은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예외 사유)

-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1. 원래의 보도후 후속보도에 의하여 충분한 반론이 이루어진 경우
 - 2.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특별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아니하고서도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 ② 제16조는 반론보도청구에 준용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 ① 범죄혐의가 있다가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추후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추후보도는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전달하는 데 국한한다.
- ③ 추후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제1, 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무죄판결 등이 있거나 그것을 안 날로 한다.
-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정 및 중재절차

제21조(조정신청)

-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정신청은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3항(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각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제15조 제1항(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언론사에게 먼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 각 청구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언론사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에는 그로부터 2월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5조 제1항은 제1항의 조정신청에 준용한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정신청서에는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중에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조정)

-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때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 ② 조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쌍방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 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새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

야 한다.

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 조언하고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합의를 권유한다.

⑥ 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⑦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23조(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 2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다만 위 법의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4조(결정)

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중재부가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직권조정결정)

-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22조 제3항에 의한 합의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 일 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조정합의 등의 효력)

- ①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② 제25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및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7조(중재)

- ① 당사자 쌍방은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의 계속중에도 할 수 있다.
-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7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의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보며, 제척·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 중재부가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에 의한 중재위원의 회피에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8조(중재결정의 효력)

- ① 제25조 제2항은 중재결정에 준용한다.
- ②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소송절차

제29조(조정전치주의)

- ①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법원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상호간에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소는 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기할 수 없다.

제30조(제소기간 및 당사자)

- ① 제29조 제1항의 소는 제24조에 의한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 ③ 제1, 2항의 소장 또는 이의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 본다.
- ④ 중재서기는 제2항의 경우에 조정사건 기록을 이의신청서와 함께 지체없이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즉시항고)

- ① 제22조 제4항의 기일 속행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인은 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당해 중재부를 경유하여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③ 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경우 중재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중재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즉시항고장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 제2항에 정한 인지를 첨부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제30조 제4항은 즉시항고에 준용한다.

제32조(중재결정 취소의 소)

- ① 중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부를 경유하여 법원에 중재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는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0일, 중재결정이 있는 날(취소의 사유가 중재결정이 있는 후에 발생한 때는 그 발생한 날)로부터 6월(다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중재결정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소의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로 한다.
- ④ 제30조 제3, 4항은 중재결정 취소의 소에 준용한다. 다만 그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 본다.

제33조(관할)

-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의 제1심 재판은 분쟁당사자인 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소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제31조의 즉시항고 및 제32조에 의한 중재결정 취소의 소는 위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4조(법원의 심리)

- ① 법원은 소가 부적법하거나 제25조 제3항의 이의신청 및 제31조의 즉시항고가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는 등으로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의 심리는 민사소송법의 본안소송절차에 의한다. 다만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소명만으로써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늦어도 사건의 접수 후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소송의 신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변론을 분리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하며,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하다.
- ⑤ 제25조 제3항의 이의신청과 제31조의 즉시항고는 제1심 재판 선고 전까지 취할 수 있다.

제35조(상소)

- ①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된 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심리결과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그 의무이행에 따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은 제32조의 중재결정 취소의 소와 재심의 소에 준용한다.

제36조(집행)

- ①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집행은 민사소송법 제693조 및 제694조의 간접강제에 의하되 집행문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제

1항의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 제2항의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에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상소 또는 재심의 제기, 상소추완신청이 있는 때에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7조(가처분)

①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현저히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등 제반사정을 정당하게 비교衡量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표현물의 제작, 반포, 판매, 방송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 표현물의 봉인이나 집행관에게의 점유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자로부터 제2항의 재판에 대한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지체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야간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④ 기타 가처분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제4절 선거관련보도의 시정청구

제38조(반론보도청구)

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있는 신분에 관한 사항 또는 정강, 정책, 공약사항에 관한 사실적 주장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같은 기간 내에 당해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24시간 내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과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협의 성립시부터 24시간 내에 이를 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협의 성립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발행호에 이를 보도하여야 하며, 그 발행호가 선거기간 종료 후에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국에 걸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론사의 대표자는 제1항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
2. 당해 보도내용이 후보자간 합동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자가 발언한 것인 때
3. 당해 보도내용이 상대방 후보자의 발언으로서 피해자가 당해 언론사를 통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선거방송 등이 예정되어 있는 때

제39조(조정, 중재 등)

①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언론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는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정기일(그 횟수를 불문한다)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쌍방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22조 제4항의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제3항에 의하여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력이 있다.

⑤ 제38조 제2항은 제4항에 의한 반론보도에 준용하며, 이의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조정결정이 있는 때에도 이와 같다. 언론사가 직권조정결정에 따른 반론보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1일당 3천만 원 이하의 비율에 의한 과태료에 처한다. 비송절차는 중재위원회가 법원에

통보함으로써 개시된다.

⑥ 언론사는 제5항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따른 반론보도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언론사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사를 반론보도와 동시에 방송 또는 게재할 수 있으며, 제35조 제2항은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과 피해자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판명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 기타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통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다른 권리와 의 관계)

① 제39조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이 법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행사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시정권고

제41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써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조정 또는 중재신청이 된 사건과 관련한 시정권고는 당해 중재부가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2조(불복절차)

①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은 당해 시정권고를 한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에서 한다.

③ 언론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재위원회나 중재부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권고의 효력)

①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

②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에 이루어진 언론보도에 적용한다.

제2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법에 의하여 위촉된 중재위원 및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기간행물법 제3장, 방송법 제91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4는 삭제한다.